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다음 대상자들은 발급기간 내에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

| 연 번 | 성 명 | 생 년 월 일 | 주 소 | 발 급 기 간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한*민 | 2006. 9. 21. | 기흥구 한보라2로 1**, 7**호 2**호 | 2023. 10. 1. ~ 2024. 9. 30. |
| 2 | 신*은 | 2006. 9. 5. | 기흥구 한보라2로 1**, 9**동 9**호 | 2023. 10. 1. ~ 2024. 9. 30. |

2. 공고기간 : 2023. 10. 19. ~ 2023. 11. 3.

3. 지참물
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(3.5cm x 4.5cm)
- 신분증명서 (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)
-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 또는 모,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이 동행

4. 유의사항

위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2023. 10. 17.

용인시 기흥구 기흥동

